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934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산촌진흥특화사업에 산촌 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 육성사업 포함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6. 7. 14.

다. 회 부 일 : 2026.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촌 관광’ 분야의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에 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육성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촌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산촌진흥특화사업에 산촌 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육성사업 포함

개정안은 산촌진흥특화사업에 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육성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의 산촌진흥 지역에서 <u>산촌진흥특화사업을</u>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촌진흥 특화사업계획(이하 “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5조(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 ----- ----- <u>산촌진흥특화사업(산촌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육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을----- ----- ----- ----- -----.
1. ~ 6. (생략) ② ~ ⑤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촌진흥특화사업에 대하여 현행법은 계획 수립·승인, 시행자, 사업비 보조·용자 및 예산 우선 배정, 시행지역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화사업의 범위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법 제2조제8호에서 산촌진흥특화사업은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임.

그러나, 정의규정에서 특화사업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촌 관광 분야의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25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귀산촌인은 4만 8천명으로 전체 귀촌인(41만 3천명) 대비 11.5% 수준에 그치는 등 산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저조한 실정이며, 관광 등 산촌에 특화된 산업 육성을 통해 정주여건·소득기반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을 통해 산촌진흥특화사업에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육성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고, 예산 우선 배정 근거가 명확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발굴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¹⁾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과 연계한 산촌 체류형 관광 확대를 통해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산촌 인구 유입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관련 조문에서 특화사업의 범위에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육성사업을 포함하고 이하 조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촌진흥특화사업”은 제2조(정의)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므로,²⁾ 정의규정에서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입법례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도 정의규정에서 “어촌특화사업”을 어촌특화(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포함)를 위하여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³⁾

산림청은 산촌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육성 사업 활성화를 통해 산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임.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 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⁴⁾

문 의 처
02)6788-5423

- 3)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촌특화”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한다.
4. “어촌특화사업”이란 어촌특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행정구역에 있는 어촌의 자원 현황과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파악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4)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